

2022년 6월 18일 서울시 지적법9급

1. <보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 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 이내의 증감

	㉠	㉡	㉢
①	20	20	20
②	20	20	30
③	20	30	30
④	30	30	30

해설) 지적법해설 P347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분기별로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로 한다.

해설) 지적법해설 P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 2. 18.>

③ 삭제 <2020. 2. 18.>

④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적측량시행 규칙 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多角網道線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0.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3.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경우**

②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③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④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해설) **지적법해설 P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토지이동종류	구분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령 제56조)
부여방법	원칙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 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①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②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분 할	원칙	분할 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예외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합 병	원칙	합병 대상 지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예외	토지소유자가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②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③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지적법해설 P3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空間情報”란 地上、地下、水上、水中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自然的 또는 人工的인 객체에 대한 位置情報 및 이와 관련된 空間的 인지 및 意思決定에 필요한 情報를 말한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지적법해설 P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도곽선 제도를 위한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단,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 크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 ②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 ③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 ④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해설) 지적법해설 P455

지적업무처리규정 제40조(도곽선의 제도) ① 도면의 위 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어야 한다.

② 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③ 도곽의 구획은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좌표의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그 도곽의 종횡선수치는 좌표의 원점으로부터 계산하여 영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종횡선수치를 각각 가산한다.

④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크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구획되어 있는 도곽과 그 수치로 한다.

⑤ 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은 0.1밀리미터의 폭으로, 도곽선의 수치는 도곽선 왼쪽 아랫부분과 오른쪽 윗부분의 종횡선교차점 바깥쪽에 2밀리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45m^2 이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m^2]은?

- ① 0.045 ② 0.05
- ③ 0.1 ④ 1

해설) **지적법해설 P1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②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③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④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해설) **지적법해설 P2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 |
|---|
|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2.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②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 지상경계 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경계점 위치 설명도
- ②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③ 도곽선과 그 수치
- ④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해설) 지적법해설 P1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독,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④ 토지목(성·도) 경(변)지 세·관·위·기·경 소·직·명 확·직·명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작성일 5. 위치도 6.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	7.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 8. 경계위치 9.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 10. 작성자의 소속·직급(직위)·성명 11. 확인자의 직급·성명
지상경계점등록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 제65조 및 시행규칙 제 60조)	④ 토지경계는 공계점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6. 경계점의 사진 파일 7.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10. <보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소유권 지분 ㄴ. 토지의 고유번호 ㄷ. 토지의 소재 ㄹ. 지번	
--	--

- ① ㄱ, ㄹ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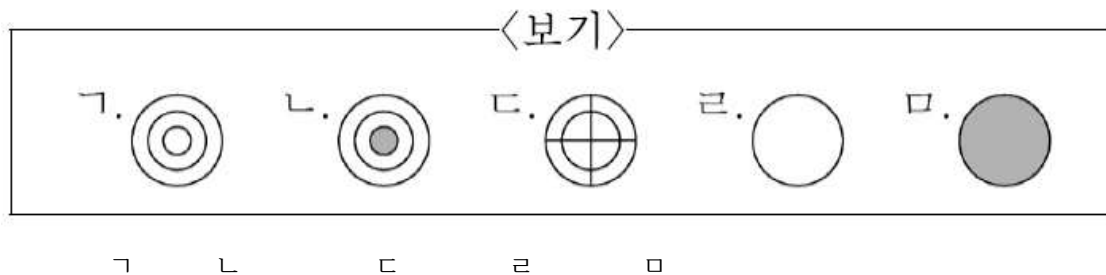
해설) 지적법해설 P139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법률 제72조, 시행규칙 제68조)			
구분	토지표시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타
토지대장(土地臺帳, Land Books)	㉠ 토지 소재	㉠ 토지소유자 변동일자	㉠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 임야대장 (林野臺帳, Forest Books)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의 이동 사유	㉠ 변동원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번호 ㉡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 축척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공유지연명부 (共有地連名簿, Common Land Books)	㉠ 토지 소재 ㉡ 지번	㉠ 토지소유자 변동일자 ㉡ 변동원인 ㉢ 주민등록번호 ㉣ 성명·주소 ㉤ 소유권 지분	㉠ 토지의 고유번호 ㉡ 필지별공유지 연명부의 장번호
대지권등록부 (垜地權登錄簿, Building Site Rights Books)	㉠ 토지 소재 ㉡ 지번	㉠ 토지소유자가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또는 명칭·주소 ㉣ 대지권 비율 ㉤ 소유권 지분	㉠ 토지의 고유번호 ㉡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 건물의 명칭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1. <보기>의 『지적업무처리규정』상 국가기준점 및 지적 기준점의 표시 방법과 명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 기호들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 ① 1등삼각점 2등삼각점 위성기준점 지적도근점 지적삼각점
 ② 2등삼각점 3등삼각점 지적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③ 2등삼각점 1등삼각점 위성기준점 지적도근점 지적삼각보조점
 ④ 2등삼각점 3등삼각점 1등삼각점 지적도근점 지적삼각보조점

해설) 지적법해설 P457

지적업무처리규정 제43조(지적기준점 등의 제도) 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제4조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하고, 그 지적기준점성과를 지적소관청이 인정한 지적기준점을 포함한다.)은 0.2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제도한다.

♣ 지적기준점 제도 (위성기준점은 제외)						
명칭	제도	크기			비고	
		3 mm	2 mm	1 mm	십자가	내부채색
위성기준점	⊕	3	2		십자가	
1등삼각점	⊙	3	2	1		채색
2등삼각점	⊙	3	2	1		

3등삼각점	⊙		2	1		채색
4등삼각점	◎		2	1		
지적삼각점	⊕	3			십자가	
지적삼각보조점	●	3				채색
지적도근점	○		2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지적법해설 P2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손실보상)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3. 손실 발생 사실
4. 보상받으려는 손실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正本(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행정구역경계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도로, 구거, 하천의 경우는 그 중앙으로 한다.
- ②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산악의 경우는

분수선 (分水線) 으로 한다.

③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측량 방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중앙 등 직접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정사영상 또는 1/5,000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한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④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해안의 경우는 만조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으로 한다.

해설) 지적법해설 P465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6조(행정구역경계의 설정) ①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 | |
|---|
| 1. 도로, 구거, 하천은 그 중앙
2. 산악은 분수선(分水線)
3. 해안은 만조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 |
|---|

② 행정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할 때 공공시설의 관리 등의 이유로 제1항 각 호를 경계선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와 합의하여 행정구역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중앙 등 직접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정사영상 또는 1/1000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한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것은 ?

①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같은 법 제16조 ,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②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③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④ 토지의 이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현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
해설) 지적법해설 P1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 |
|--|
|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량기준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삼각점이란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 ② 지적삼각보조점이란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 ③ 통합기준점이란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 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이다.**
- ④ 우주측지기준점이란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해설) **지적법해설 P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가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우주측지기준점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
위성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 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통합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 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 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중력점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지구자기점(地磁氣點)	지구자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수준점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확정(劃定)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삭제 2021.2.9.)
수로기준점	수로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평 위치와 높이, 수심 측정 및 해안선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과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으로서 수로측량기준점, 기본수준점, 해안선기준점으로 구분한다.(삭제 2021.2.9.)
삼각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공공기준점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 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공공수준점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지적기준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	지적측량 시 수평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 위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한다.

②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에서 제외한다.

③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④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해설) 지적법해설 P9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한강을 이용한 경정장은 하천이고, 경정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추면 체육용지이다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토지의 개별시장가격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법해설 P356 P357 P361 P36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대상·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18. 『지적확정측량규정』상 지적확정측량 의뢰인이 지적 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

②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기준점성과표 및 관측부

③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④ 사업인가서 (사업허가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업계획도

해설) **지적측량기본서 P639**

지적확정측량 규정 제4조(확정측량 의뢰) ① 확정측량 **의뢰인**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의뢰에 대하여는 규칙 제25조를 따른다.

1. **사업인가서**(사업허가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계획도**
2.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3.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기준점성과표 및 관측부**
4. 지구계점·가로중심점·가구점 계산부 및 망도
5.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확정측량을 의뢰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사업지구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이 확정측량 검사를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집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
2. 측량소요 기간과 측량팀의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
3.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실시 방법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③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법해설 P1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결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결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지적소관청은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 정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지적법해설 P347 P348 P351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계획	기본계획 (규·연·인·방) (표준·교육·연구)	시도종합계획 (추·소·세·교·사·연·인)	실시계획 (홍·명·위·원·추·시·사·기·사·시·측·시)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2.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3.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5.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이하 “시·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 6. 디지털 지적(地籍)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7.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개발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2.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3.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4. 지적재조사사업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지적소관청별 사업량 7.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 2.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지적재조사지구의 현황 5.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6.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7.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8.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9.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11.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12.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 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의2(시·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
|--|
|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
|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 나.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한다) 1,000명(제1항에 따라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

③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3. 90일 이상 계속하여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6. 8.]

